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3 | 2024.12.02 (2024.11.25~12.0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5~12.01)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와 소통망(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하여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9인)**」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대·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0인)**」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12.2.14:00 및 12.4.14:00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복지위>, <외통위>,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기획재정부) 8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발표(환경부) 9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방송통신위원회)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1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3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17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9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3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4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6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0인)	2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8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9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0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30
•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	3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3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3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3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34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3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3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38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권영진의원 등 26인)	3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3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4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5~12.01) [바로가기](#)

-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주요 업데이트 및 시사점
- [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2 (2024년 11월 4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 약 1.8조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지고 분담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상향 추진 - '25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	2024-11-27
-------	--	------------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재정지원) 국회와 협의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

-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
-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

② (세제지원)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

③ (금융지원)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해 '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

-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5년 4.25조원 공급하고, '25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④ (인프라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

-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약 3GW('30~)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단계추가 공급('39~)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
-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약 3GW('27~)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추가 전력공급('39~)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환경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발표

- 기후변화에 맞춰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 지하역사·조리공간 등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실내공기질 관리의 국내외 협력 확대

2024-11-25

환경부는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발표하였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임.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힘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은 5년간 학교,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2년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17.5% 감소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음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반영되었고 ①기후변화에 맞춘 실내공기질 관리 ②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관리 ③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역량 제고 ④실내공기질 관리 협력확대 등 4가지의 핵심 분야로 이뤄졌다고 밝힘

특히, 환경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와 소통망(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고 밝혔음.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하여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임

핵심분야	중점과제
(1) 기후변화에 맞춘 실내공기질 관리	▶ 건강 위해도를 반영한 다중이용시설 관리 ▶ 민감계층 이용시설 맞춤형 지원 ▶ AI 활용, 냉·난방기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2) 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관리	▶ 지하역사별 공기질 맞춤형 관리 ▶ 학교 공기질 유지·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 ▶ 조리매연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3) 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역량 제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내공기질’ 분야 추가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 ▶ 국가측정망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4) 실내공기질 관리 협력확대	▶ 아시아 지역 정부간·국제기구 협력 구축 ▶ 실생활 밀착형 연구지원 추진 ▶ 국민 참여 기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방지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
-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 부처간 상설협의체와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 이행 보장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됨.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음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음.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스팸 중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불법스팸 중단계 부당이익 환수	① 불법스팸 발송자 및 묵인·방치 사업자 과징금 부과 ② 불법스팸매매 범죄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③ 부적격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방지 ④ 문제 사업자 영업정지 및 시장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⑤ 문자 발신번호 위변조 발송차단, 문자서비스 취약점 개선 ⑥ 불법스팸악성문자 발송차단 ⑦ 문자재판매사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⑧ 스팸 시 필터링 및 악성스팸 주의 안내 ⑨ 해외 불법스팸 차단 강화 ⑩ 휴대전화 안심이용 환경 구축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⑪ 관계부처 협력 강화 ⑫ 민·관 공동 대응 상설 협의체계 구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29 시행

수소용품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화학반응기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 및 수전해설비를 수소용품의 관리체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수소생산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수소추출설비만 수소용품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26 시행
-------	-------------------	---------------

외해(外海)양식업의 종류에 기존의 가두리양식업 외에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추가하여 외해에서도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식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	---------------------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에 기존의 육상수조식(水槽式)·육상축제식(築堤式)·밧줄식·말목식·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외에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산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11-26 시행
-------	-----------------------	---------------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25 시행

관광식당업이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인력 기준 및 유원시설업의 사업장 등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나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은 이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26 시행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법원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5-01-31 시행 예정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되어 분사무소 · 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제명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변경함
- ② 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 ③ 분사무소 · 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분사무소 · 지점의 등기기록 양식을 전부 삭제함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7. ~2025.01.06.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tel:044-202-8997)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28. ~2025.01.07.
-----	---------------------------------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함

※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35, 팩스: 044-201-6728\)](tel:044-201-673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28. ~2025.01.08.
-----	---------------------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tel:044-201-691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29.
~2025.01.0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전화: 044-201-4011, 팩스: 044-201-5601\)](tel:044-201-4011)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2025.01.08.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안 제2조)

-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②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안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규정 재정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화: 044-200-5683, 팩스: 044-861-9436\)](tel:044-200-5683)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9.
~2025.01.08.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 (안 제15조제6호 신설)

- 수중 또는 표층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밭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가두리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tel:044-200-5683) (전화: 044-200-5683, 팩스: 044-861-943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3인)

2024-11-28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또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뇌물을 제공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하여 인·허가의 반대급부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전받는 등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기타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현행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민복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130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1-25 발의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2024-11-25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2024-11-26 발의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부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2024-11-26 발의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11-27 발의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9인)

2024-11-19 발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24-11-28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안 제82조)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4-11-28 발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 20조)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024-11-29 발의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024-11-29 발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여 신설 법인이 상장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회사의 주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6제5항·제6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2024-11-29 발의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2024-11-27 발의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5조의8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4-11-28 발의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06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024-11-26 발의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024-11-28 발의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1-26 제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 (안 제11조의2)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결격사유 정비 (안 제16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의 결격사유를 법인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③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안 제16조의2 신설)

-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 (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11-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11-29 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용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용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1-26 제출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24-11-28 발의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의원
등 30인)

2024-11-25 발의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 공급망실사법(유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운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임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제1차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 · 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 · 중견기업 대상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직접 수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 · 중견기업에 비해 자본 · 정보 · 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 · 투자, 대 · 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 ·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2024-11-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2024-11-27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에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4-11-28 발의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정의하고,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신설)
- ②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2조의 14 신설)
- ③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안 제62조의15 신설)
-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규정함 (안 제62조의16부터 제62조의19까지 신설)
- ⑤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 (안 제62조의20 신설)
- ⑥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안 제62조의21부터 제62조의23 까지 신설)
- ⑦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2조의24 신설)
- ⑧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함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마련함 (안 제8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11-28 발의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안 제 10조의8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
인)

2024-11-29 발의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써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4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2024-11-26 발의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액상형전자담배등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량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

2024-11-26 발의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2024-11-29 발의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1-25 발의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11-25 발의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며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마치 60세 정년이 상한과 같이 작용하며,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고용상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9 신설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11-26 발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2024-11-27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48조제1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024-11-27 발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4-11-27 발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신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11-27 발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 · 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2024-11-25 발의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이륜차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음식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며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이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 간 계약이 사업자 일방이 제시하는 약관에 의해 이뤄지고,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의 정보 부재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해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종사자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1-26 제출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2024-11-26 발의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 '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우선공급받지 못하도록 우선공급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법적 절차도 부재하였음. 이로 인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 신설 등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지 내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024-11-27 발의

현행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12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11-27 발의

현행법령은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2024-11-27 발의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 (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 권영진의원 등 26인)

2024-11-28 발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2024-11-2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2024-11-28 발의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2(월) 14:00	- 안건 심의
	12/4(수)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2/3(화) 10:00 - 감사요구안 상정 및 심사
		12/5(목) 10:00 - 고유법 상정
	법안심사1소위	12/6(금) 10:00 - 고유법 심사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2/2(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2/3(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3(화) 16:00 - 법안 의결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	12/2(월) 09:3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2(월) 10:00 - 법안 의결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12/3(화) 11: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2/4(수) 본회의 산회 직후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5(목) 09:00 - 법안 의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12/3(화) 10:00 - 법안 심사
	환경법안소위	12/4(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5(목) 14:00 - 법안 의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2/3(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2/4(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02(월) 10:00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 방향 토론회	김위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02(월) 14:00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손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2/03(화) 14:00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2]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민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03(화) 14:00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04(수) 10:00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선수금 유 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의 모색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04(수) 14:00	국가비전2050포럼 : (특별강연) 대한민국 치유의 길 - 일 백탈수 지역민국	박수만·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2/05(목) 13:30	2024 K-eco 미래물관리 국제 포럼 :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물관리	김성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05(목) 13:3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전현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06(금) 09:30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박주만·진성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2/06(금) 10:00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1차)	김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06(금) 14:00	충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김위상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06(금) 15:00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유역하수도의 역할 과 미래 토론회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2/2(월)	「THE 현안」 제36호(2024-36호) 발간	국회도서관	
	1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1호(2024-23호) 발간		
	12/4(수)	「금주의 서평」 제706호(2024-47호) 발간		
	12/5(목)	「현안, 외국에선?」 제96호(2024-24호) 발간		
	12/2(월)	「Futures Brief」 제24-10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26(화)	「현안, 외국에선?」 제95호(2024-23호)	국회도서관	
	11/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0호(2024-22호)		
	11/27(수)	「금주의 서평」 제705호(2024-46호)		
	11/27(수)	「THE 현안」 제35호(2024-35호)		
	11/26(월)	「NABO Focus」 제7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대미투자산업에 미칠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5~12.0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5(월)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주요 업데이트 및 시사점
11/27(수)	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11/29(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2 (2024년 11월 4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